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5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권영세·강대식·김정재

안철수 · 인요한 · 주호영

김상훈 • 이인선 • 서일준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·시
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한편,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,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투표함·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 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(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중 "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"를 "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을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하며"로 한다.

제170조제2항 중 "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"를 "경찰공무원 2명이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8조(사전투표) ① ~ ⑤	제158조(사전투표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	6
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	
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	
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	
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	
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	,
1.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	1
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	
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	
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	
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	
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	
우편으로 발송한다. 이 경우	
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	
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	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 1명과
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	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
여야 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이	찰공무원 2명을 해당 우체국
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	까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하며
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	
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	
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	

유를 기재한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⑦ ·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第170條(投票函 등의 송부) ①	第170條(投票函 등의 송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	2
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	
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	
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	<u></u> 경찰공무
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	원 2명이 동행하도록 하여야
<u>있다</u> .	<u>한다</u> .